

NOV 2020. Issue 145

ZOOM 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Where Is Grace Chang?

03 ... Dear Kamala Harris



Cover Story

06 ... 코로나19 방역물품과 통관 관련 제도 개정



Voice From the Field

09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수입 요건 안내



Inside Vietnam

12 ... 베트남의 Form D 관련 규정 개정



관세무역 관련 법령변경 소식

16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 관련 심판사례

18 ... FTA 협정세율 적용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후검증 시 가산세 면제요건
인 '정당한 사유'란



Dear Kamala Harris



장 승 희
대표 관세사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당선자께,

안녕하세요, 11월 7일 당신의 연설을 감명 깊게 보았고, 이후 한글로 번역된 연설문을 읽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기에 오늘 당신께 감사의 편지를 드립니다.

“I stand on their shoulders”

100여년전부터 미국에서는 투표권 등의 기본권을 얻기 위해 많은 여성들이 투쟁하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흑인, 아시아계, 백인, 라틴계, 북미 원주민 여성들이라 하셨지요. 험난한 역사 속에서 그 길을 닦아온 사람들이 있었기에 흑인이고, 아시아계이고, 여성인 당신이 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성공에 자만하지 않고 선조들에게 그 공적을 돌리는 당신의 겸손함을 높이 삼니다.

실제로 당신이 겸손한지 여부는 모릅니다. 늘 겸손하게 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겸손한 척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의 패배 요인 중 하나는 오만한 말과 태도라고 하더군요. 최근 78세의 나이로 은퇴한 한국의 축구중계 캐스터는 “내가 ‘룡런’한 비결중의 하나는 겸손이다. 겸손하게 살기는 어렵는데 겸손한 척은 할 수 있더라.” 하였습니다. 겸손한 척이라도 하려고 노력하면 높은 지위가 주는 교만함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This is a country of possibilities.”

수많은 선조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미국은 ‘가능성의 나라’로 불리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어머니께서도 따님이 부통령이 될 것이란 상상은 못했지만 이런 ‘가능성’을 보며 19세의 나이에 미국으로 가셨겠지요.

4년전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패배한 힐러리 클린턴도 승복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장 높고 단단한 유리천장을 깨지 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는 반드시 해낼 겁니다 지금 이 연설을 보고 있는 모든 어린 여성들이여, 여러분은 소중하고, 강력하며, 세상의 모든 기회와 가능성을 누려 마땅하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No matter who you voted for”

이번 선거는 68%라는 유사 이래 최대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47%가 넘는 유권자들은 트럼프 현 대통령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전 미국 국민이 당신들을 지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통합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많은 경험이 쌓인 조 바이든 당선자는 치료자이고 통합자라 하셨습니다. 새 대통령과 함께 자신의 지지자 뿐 아니라 반대자들에게도 미국 국민의 목표의식을 확고히 해줄 수 있기 바랍니다.

학자들은 미국의 양당정치에 대해서 비판 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미국과 미국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당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합니다. 양당 후보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한 많은 약속들은 대부분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행에 옮기고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타협과 초당파적인 자세가 요구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양당 타협 시 발생가능한 자기 진영의 비난을 두려워 합니다.* 그러니 7천3백만의 미 국민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은 공화당이라는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행동한다는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부디 해리스 당신은 진영만이 아닌 미 국민 전체의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A leader, our children will look up to”

미국 국민 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우러러 볼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이 야망을 갖고 꿈을 꾸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자신만의 비전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4년동안의 지지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해 실용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십시오. 그리하여 100년 후에도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She maybe didn’t quite imagine this moment.”

60여년전 당신의 어머니가 상상을 하지 못했을 일이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상상을 할 수는 없어도 비전을 갖고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힐러리 클린턴도 자신보다 더 획기적인 흑인이며 아시아계 여성이 부통령이 되리라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희망을 갖고 단합하며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응원해야 합니다. 서로 진실하게 품위를 지키면서 말이지요.

과학의 발전으로 Covid19 사태가 해결되어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힘든 일, 필요한 일,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부디 변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Katherine Gehl, Michael Porter(2020), 『권력의 배신』, 박남규 옮김, 매일경제신문사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Seunghee Chang*



Cover Story

코로나19 방역물품과 통관 관련 제도 개정

코로나19 방역물품의 일상화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경제와 사회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언택트가 일상화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휴대하는 것은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로 인하여 코로나19 방역물품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 상반기에는 품귀현상까지 발생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 검사에 필요한 물품과 방역에 필요한 물품의 충분한 공급을 위해 정부가 수급통제를 하게 되었다.



오 규 태 관세사
ktoh@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품목분류
- 관세환급

코로나19 방역물품 기존 통관방식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월 이후 관련 방역물품의 수입은 품목마다 다르지만, 의약외품 마스크나 손 소독제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해당하여 수입요건을 획득하여야만 가능하였다. 그리고 국내에 수급 불안정으로 인하여 마스크 수출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수출 수량을 제한하기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의 경우 약사법 대상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획득하여야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이다. 하지만 국내에 마스크가 부족하여 해외에서 무상으로 받는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대한 지침을 새롭게 마련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마스크의 품목분류는 제6307.90-9000으로 일괄 분류하고 다만 표준품명으로 이를 구분하여 신고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물품 등의 규정 개정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제한되었던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에 대한 각종 규제가 폐지되어 판로가 확대되고 수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국내판매업자의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제도 폐지로 이제는 시장기능이 온전하게 작동할 수 있게 되었다.

식약처는 수출과 달리 마스크에 대한 수입의 경우 감염병 대유행으로 방역물품의 신속수입을 위해 국가 비상상황에서 비상업적·비판매 목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에 포함 시키는 행정예고를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스크에 대한 품목번호는 제6307.90의 기타로만 분류되어 할당관세를 부과하거나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품목통제 대응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따라서 기재부는 2021년 HSK를 개정하여 위생용 마스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어 품목번호를 신설한다고 예고하였다.

구분(안면 마스크)	품목번호
수술용 마스크	제6307.90-4010호
보건용 마스크	제6307.90-4020호
비말차단용 마스크	제6307.90-4030호
그 밖의 안면마스크	제6307.90-4090호

마지막으로 마스크와 손 세정제에 대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만기를 연말까지 연장하도록 하였다. 마스크 수급이 개선 되었지만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판단된다.

시사점

코로나19로 인하여 관련된 품목의 수출입 통관제도가 취지와 상황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 규정과 법률은 시대의 상황과 흐름을 100% 따라갈 수 없으나 필요에 따라 개정되고 개선되고 있다.

수출입 최일선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변화하는 사회적 이슈에 늘 관심을 가지고 직접 통관업무를 하면서 발생 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나 국가기관에 제도개선을 꾸준히 개진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감염병 대유행이 또 온다고 하더라도 수출입 통관은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Voice From the Field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수입 요건 안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요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현재 수입요건 확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습니다. (2020.07.01.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시행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신규 요건에 대하여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설된 수입요건에 대하여 생소한 분들을 위하여, 본 요건의 대상 제품과 면제요건 등에 관하여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다은 관세사
dechung@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검역/요건
- 품목분류
- 관세환급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합니다. 기존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상 위해우려제품 품목 및 관리조항이 일괄 이전되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되었으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품목에 따라 신고대상 및 승인대상 제품으로 구분됩니다. 대상 제품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류	품목	비고
세정제품	세정제 제거제	확인 및 신고
세탁제품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확인 및 신고
코팅제품	광택 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 방지제 다림질보조제	확인 및 신고
접착·접합제품	접착제 접합제	확인 및 신고
방향·탈취제품	방향제 탈취제	확인 및 신고
염색·도색제품	물제 염색제 물제 도색제	확인 및 신고
자동차 전용 제품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	확인 및 신고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인쇄용 잉크·토너	확인 및 신고
미용제품	미용 접착제 문신을 염료	확인 및 신고
살균제품	살균제 살조제	확인 및 신고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승인
구제제품	기피제	확인 및 신고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승인
보존·보존처리제품	목재용 보존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확인 및 신고
기타	초 습기제거제 인공 눈 스프레이	확인 및 신고

수입 요건확인서 발급 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 내 기업로그인 후 전자민원 - 수출입 업무 - 수입 요건확인번호 신청을 통하여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요건면제확인서도 요건확인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사이트 내 수입요건 면제신청을 통하여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CHEMP 사이트 - <https://chemp.me.go.kr/>)

요건 면제 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수입요건 면제확인 신청사유는 아래의 네 가지입니다.

- ① 「화학제품안전법」 관계 조항에 따른 확인·신고·승인 등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소량의 시제품
- ② 기업,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실험·개발용으로 사용
- ③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제품
- ④ 전량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위의 네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요건 면제신청서를 발급받은 후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신청 비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목록에 있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①공장의 생산 공간 또는 자동차정비소의 정비 공간 등 통상적으로 작업자 이외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지 않는 작업공간에서 사용하는 제품, ②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포함되지 않는 제품은 요건 비대상입니다. 따라서 요건 비대상 제품들에 대해서는 요건확인신청 또는 요건면제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의 사항

기준에 수입요건이 없던 제품들이 대상 제품에 다수 포함된 본 규정으로 인해 시행 초기 통관 시 다소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요건 비대상과 요건 면제대상을 정확히 구별 숙지하여 제대로 된 통관절차를 밟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입 후에는 판매 및 유통 시 표시기준에 맞는 적절한 표시를 하여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해당 제품들을 신규로 수입하려는 기업은 취급 품목에 맞는 적절한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Inside Vietnam

베트남의 Form D 관련 규정 개정

Form D 발급 관련 Circular 19/2020/TT-BCT 개정

아세안 국가간의 상품무역협정인 ATIGA의 적용을 위한 C/O Form D는 ① 종이 Form D 발급 ② 전자 Form D 발급 ③ 자율발급 중 하나의 방법으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자율발급은 Qualified Exporters 지위를 획득한 당사자만 가능하다.

2020년 9월 27일, ATIGA에 따른 Form D의 양식 및 자율발행에 대해 개정하는 Circular 19/2020/TT-BCT가 시행되었다. 본 규정에서는 "ATIGA 원산지 규정 시행"에 대해 규정하는 22/2016/TT-BCT와, "ATIGA의 C/O 자율 발급 시범 프로젝트"에 대해 규정하는 28/2015/TT-BCT를 개정 및 일부 내용을 신설한다.

Form D의 자율증명 시에는 C/O 발급 기간 대폭 감소, 관련 비용 절감, 발급 절차 간소화 등의 이점이 예상된다.



박 성 현 관세사
sh.park@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FTA 컨설팅
- FTA 교육
- 관세환급
- 품목분류

주요 개정내용 1. Form D 양식 변경 및 발급 기관 축소

- 1) Form D의 9번란(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FOB) where RVC is applied) 기재 방법 변경
 (기존) RVC 기준 적용 시 FOB 가격 기재
 (변경)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와 수출입하는 물품이 RVC 기준이 적용된 경우에만 FOB 가격을 기재 (국가와 RVC 요건 모두 충족 시에만 FOB 가격 기재, 그 외에는 기재하지 않음)
- 2) Form D 발급 기관 축소
 (기존) 수출입관리부 20개소, Industrial Zones Authority 39개소
 (개정) 수출입관리부 19개소(하이퐁 수출입관리부 삭제), Industrial Zones Authority 39개소 삭제
 ※ 본 규정은 2020년 9월 27일 발효되었으나, 2020년 12월 21일 이전까지는 개정 전의 양식에 따라 발급된 Form D도 수락한다.

주요 개정내용 2. AWSC 체제하에 Form D의 자율 증명을 위한 규정 신설 및 개정

베트남은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오스와의 양허를 통해 Form D 자율 증명의 시범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28/2015/TT-BCT(2015.8.20.))을 시행해왔다. (시범 체제)

그러나 AWSC(ASEAN-wide Self Certification) scheme을 통합하기 위해 개정된 ATIGA 1차 프로토콜이 2020년 9월 20일 시행됨에 따라, Form D의 자율 증명을 하는 경우 AWSC가 적용된다. (AWSC 체제)

이에 기존의 법령을 개정하는 19/2020/TT-BCT(2020.8.14)에서는 AWSC 체제 하에서 Form D의 자율 발행을 위한 요건, 자율 증명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한다.

1) Form D 자율증명 절차

인증 요건 확인 → 인증 신청 → 승인 →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에 원산지 신고 (자율 발행) → 발행일로부터 7 근무일 이내에 관련문서와 원산지 자율 증명 문서를 ECOSYS에 업로드 → 원산지 자율 증명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보관

* Form D의 자율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국으로부터 Qualified exporter 자격 취득 필수

2) 인증 취득

A. 인증요건 :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i. 제조자인 수출자
- ii. C/O 자율증명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산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자
- iii. MOIT 또는 MOIT에서 지정한 교육 기관에서 원산지 교육을 받은 직원 보유
- iv. 서면 신청서 제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HS 4단위가 동일한 물품에 대해 특혜 C/O를 발급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 v. 제조자가 아닌 수출자인 경우, 수출자는 수출 물품의 원산지에 대해 제조자로부터 서면 약속을 받아야 하며, 자율 증명 증빙 서류의 확인이나 제조 시설에서의 확인 및 검증 시 협력해야 한다.

B. 인증 코드 : 인증이 승인되면 12자리의 자율 증명 코드(ID Code)를 발급받는다.

- i. 처음 7개의 문자 : "VN-AWSC"
- ii. 다음의 5개 문자: 일련번호

C. 인증 유효기간 : 본 규정에 따라 취소되지 않는 한 발급일로부터 2년 동안 유효

3) 자율 증명 방법

Qualified exporter는 수출 시 자신이 발행한 invoice, Billing statement, packing List, Delivery order에 다음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상품의 원산지를 신고할 수 있다.

A. Qualified exporter에 대한 상세 정보(ID code 포함)

B. 다음을 포함하는 상품 정보

- i. 상품명
- ii. HS code 6자리 또는 ASEAN 상품 분류 코드
- iii. 원산지 기준
- iv. 원산지 국가
- v. RVC 기준인 경우 FOB 가격

- vi. 상품 수량
- vii. 상표(있는 경우)
- viii. 자율 증명 back-to-back C/O인 경우, reference number, 원산지 자율 증명서류 발행일, 원산지 국가, 최초 수출국의 ID code(있는 경우)를 추가

C. 다음을 포함하는, Qualified exporter의 원산지 신고서의 서명권자의 증명서

- i. 원산지 자율증명 상품이 ATIGA 제3장의 상품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약속
- ii. 서명자의 이름 및 서명

※ 본 내용은 베트남 현지 배포 자료를 근거로 신한관세법인이 구성, 재정리한 것으로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 베트남 소식 관련 상세 문의가 있는 경우 다음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베트남관세법인

박은실 법인장: +84-(0)24-7300-8630 [VN], +82-(0)70-5222-7280(KR) / espark@shcs.kr, scv@shcs.kr

신한관세법인

최대규 이 사: +82-(0)2-3448-1181 [KR] / dkchoi@shcs.kr

박성현 관세사: +82-(0)2-3448-1181 [KR] / sh.park@shcs.kr



관세무역 관련 법령변경 소식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규칙명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66호, 2019.12.31)

개정 사유

가.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을 위해 FOB 200만원 이하 물품의 수출목록을 신고서로 변환하여 혜택을 확대하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

- 물품 배송내역을 수출신고서로 자동변환하고 적재확인을 위한 적하목록 제출은 적재이행내역 신고로 같음
-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수출실적 인정, 반품절차가 간소화되고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제조자에 대한 관세환급 활성화와 함께, 국세청과 전산연계를 통해 별도 서류 없이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 제공



조 나 현 관세사
nhcho@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검역/요건
- 품목분류

나.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중 전자상거래 물품과 위탁판매 수출물품의 확정 가격신고 가능 기산일과 만료일을 별도로 규정하여 신고정정으로 인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불이익 최소화

주요 개정 내용

1) 신규 시스템 도입에 따라 통관절차 개편과 시스템 정의 추가

- 탁송품 등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출신고 생략이 가능한 예외적인 통관절차를 간이통관신고에서 목록통관절차로, 제출하는 목록을 간이통관목록자료에서 통관목록자료로 용어 변경
- 전자상거래 업체·수출업체 정의를 삭제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의 명칭을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신규 도입 되는 수출목록 변환시스템 정의 추가
- 정식통관절차 중 신고 항목을 간소화한 수출신고로서 전자상거래 간이 신고 시스템과 새로 도입되는 수출목록 변환시스템을 이용한 신고 등을 간이수출신고로 새롭게 정의

2) 수출목록 변환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용신고서식과 적재이행절차 신설

- 신규 도입되는 수출목록 변환시스템의 수출신고 근거, 전용서식을 마련 하고 적하목록에 갈음하는 적재확인을 위한 이행신고 절차 신설

3) 전자상거래 및 위탁판매 수출물품 잠정가격신고 별도 규정

- 수출 이후 수출가격과 수량이 확정되는 전자상거래 거래 특성을 반영,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중 전자상거래 물품과 위탁판매 수출물품은 수출 시에 예정금액을 신고하고 판매금액이 확정되는 때 또는 판매 후 대금입금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확정가격 신고하도록 규정

시행일자(예정)

2020년 中



관세 관련 심판사례

FTA 협정세율 적용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후검증 시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 란

[조심 2019관 0093 (2019.12.12)]

FTA 협정세율 적용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실패 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며 기본관세와 협정관세의 차액을 추징당하는 동시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협정관세적용이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사전에 물품의 원산지 및 증빙서류를 점검하는 등 수입자가 주의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행 및 가산세 면제를 통해 추징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세심판례를 통해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김 윤 현 관세사
yunkim@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기업심사 및 조사
- 품목분류
- 외환자문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2016.2.5부터 2018.3.22까지 수출자로부터 휴대용 X선 형광분석기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FTA협정관세 관세율 0%를 적용 받아 수입통관 진행

처분청은 2018.4.27 청구법인에게 위 협정관세율의 적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자율점검을 요청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수출국 관세당국에 간접검증을 요청함

처분청은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원산지검증 결과를 회신 받아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조사 결과 및 특혜관세 적용배제에 따른 과세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함

처분청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은 승인하였으나, 가산세 면제는 승인하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 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심리 및 판단

자율점검 요청 이전인 2016.2.25.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PSR임을 서로 확인하였는데 이는 원산지의 실질적 요건 확인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CTH(4단위세번변경)이므로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재명세 등의 자료가 필수적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수출자(제조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이러한 자료를 특수관계 없는 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 제공받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에게 이러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자율점검 요청 이전에 여러 차례 이메일 등을 통하여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결과적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어 부족세액이 발생하였더라도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평론

관세청은 2018년 9월 가산세의 면제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성실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FTA 관세법령상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적용 기준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해당 지침에서는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사유가 수입자에게 없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협정관세적용이 배제되더라도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FTA를 활용하는 업체들은 향후 원산지 검증을 대비하여 원산지 결정기준 및 증빙서류 관련하여 수출자와 주고받은 메일 내역, 공장실사 보고 등 사전에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한 증빙을 갖춰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